

한-인도네시아 CEPA EODES 정식 운영 안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인도네시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EODES)'를 구축하여 '24.2.29(목)에 정식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공지한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EODES 교환 시 종이 C/O의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우리나라는 C/O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에게 종이 C/O 또는 전자본(PDF) C/O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본 C/O를 각각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수입자는 우리나라 세관에 C/O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발급한 전자본 C/O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EODES와 C/O의 발급/보관/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2. EODES 전송(교환) 오류 발생 시 통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C/O(종이 인쇄본 또는 전자본), 인도네시아에서 발급한 전자본 C/O로 상대국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3. 한-인도네시아 CEPA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기 공지된「중·수량 단위 및 적재항·목적항 코드」만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인도네시아 CEPA에 대한 EODES 구축·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중·수량 단위 및 적재항·목적항 코드를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게시번호 202312282328) 원활한 EODES 운영을 위하여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관세청 FTA집행과(전화 042-481-3232, 이메일 kcsfcd@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한-인도네시아 CEPA EODES 정식 운영 안내

| Contact



차재영 관세사 / Director

T 02-6011-3464
E jycha@esein.co.kr



김기림 Asso

T 02-6011-3025
E grki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